

地方 建築文化財의 保存과 變形實態에 관한 調査研究*

--- 慶尙南道의 有形文化財를 중심으로

姜榮煥

(울산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

I. 연구의 목적과 방법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문화재란 전승되어 오는 한 민족집단의 문화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의미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역사상, 학술상, 종교상, 예술상, 관상상, 기타 생활문화의 추이를 가르칠 수 있는 실체로서 우리민족 전체의 정신적 작위에 의한 가치가 부여된 것”¹⁾을 의미한다. 이는 단지 박물관 안에 보관되어 있는 과거시대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살아 움직이며 전통을 통한 문화의 연속성과 민족의 정체성, 그리고 연대감 및 자부심을 자각시키는 공유재산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세계의 각국, 특히 문화 선진국들은 일찍부터 자국의 문화재를 발굴, 보존하는

일에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왔고, 그 방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왔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국가의 문화재를 인류공동의 유산으로 인식하고 그 보존과 복원에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하에 제정된 1931년 아테네 헌장과 1964년의 베니스 헌장은 문화재 보존에 있어서 국제적인 원칙들을 채택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보존제도에 큰 영향을 주어왔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을 출발로 문화재의 발굴과 지정 및 보존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보존제도의 연혁이 불과 30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문화재 보존에 투자되는 예산의 규모나 보존제도, 기술 등 모든 면에서 소위 문화 선진국의 그것과는 큰 격차가 있다. 이는 국가의 경제력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개발과 변화를 우선시했던 근대화 과정에서 문화재에 대한 사회의 일반적 인식이 문화보존을 뒤로 미루어 온 결과이기도 하다. 즉, 경제적 실익이 없는 문화재 보존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둘 수 없었고, 개발이익과 마찰될 때 쉽게

* 이 논문은 199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정재훈, “문화재보존의 기본방향”, 『문화재 제17권』, 문화재관리국, 1984, 1-2쪽

포기되어 왔던 것이다.

그나마 국가 지정문화재는 그 지정으로 부터 보호·관리, 보수·정비, 조사·연구 등에 비교적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문화재관리국이라는 전문부서의 직접적인 보존활동이 이루어지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진 지방의 문화재는 지극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예산과 전문가의 부족, 제도의 비효율성 등으로 그 실태마저 파악되지 못한 채 훼손, 변형, 사장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문화재의 보존에 있어서 원형보존의 중요성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물론 건축적 유산의 경우 건립된 이후 수없는 변형을 거치기 때문에 무엇을 원형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異論이 있을 수 있다. 문화재 보수에 있어서 '양식의 통일(unity of style)'을 중시하는 양식주의 이론과 '원형 그대로의 보존'을 중시하는 낭만주의 이론으로 대비되는 것²⁾도 이러한 이유때문이다. 어떠한 이론을 적용하든 문화재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잃지 않도록 원형을 유지하는 일은 문화재 보존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하겠다.

특히 건축문화재는 그 성격상 박물관과 같은 특정한 장소에서 보존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에 특별한 보존방법이 요구되어 왔다. 우선 건축문화재는 그 입지적 성격이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의 대지만이 아니라 대지를 둘러싸고 있는 광역적 환경은 그 건축적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정되어 왔다. 따라서 본래의 위치에서 보존되어야 할 당위성을 갖는다. 또한 건축문화재는 자연상태에 노출되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에 의한 노후화, 공기오염, 진동,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에 노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건축문화재는 그 자체가 지속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활용에 의한 노후화, 전란, 파괴, 화재, 개조, 보수 등 인위적인 훼손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문화재의 성격이나 규모, 입지성에 따라 보존방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문화재 보존의 기본방향³⁾은 지극히 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대

상 건조물에 대한 조사·연구의 필요성, 건조물 문화재에 대한 훼손원인의 규명과 대책의 강구, 보호방법의 적절화 등이 시급히 요구되어 왔다.⁴⁾

지금까지 문화재 보존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제기하는 연구, 문화재 정책 및 행정의 기본방향이나 개선방향을 찾기 위한 연구, 외국의 문화재 보존 정책을 다룬 연구들이 있어 왔으나 건축문화재의 보존방법을 다룬 연구의 수는 극히 적다. 그나마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한 사례조사 및 연구들이⁵⁾ 주류를 이루고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는 지방 건축문화재에 대해서는 그 현황마저도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지방 건축문화재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보존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인위적 행위로 인한 건축문화재의 변형실태에 주목하여 변형원인의 규명과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지방 건축문화재의 보존활동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지방지정 건축문화재의 보존현황과 변형실태 및 원인을 파악하여 원형보존을 위한 대책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경상남도 지정 건축문화재이며, 여기에서 건축문화재란 지정문화재 중 건조물에 해당하는 것을 지칭한다. 이러한 건조물들은 지방의 문화재조례에 의해 有形文化財, 史蹟, 民俗資料, 文化財資料 등으로 지정되고 있다.

경상남도 지정 건축문화재의 변형실태를 조사하기에 앞서 우선 보존현황을 파악하였다. 보존현황은 두부분으로 나누어 파악하였는데, 먼저 건축문화재의 지정연혁과 현황, 지정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다음으로 보존제도 및 행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들은 보존제

3) 정재훈, 앞글, 5-6쪽

4) 윤장섭, "건조물 유형문화재 보존에 관하여", 『문화재 제 18호』, 문화재관리국, 19-21쪽

5) 문화재 연구소에서 지속적으로 간행되는 『한국의 고건축』은 이 범주에 속한다.

2) 김봉건, "문화재보수이론", 『문화재 제25권』, 문화재관리국, 1992, 73-90쪽

도나 행정상의 문제점들이 건축문화재의 변형에 주요하게 관련되었음을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건축문화재의 변형실태에 대한 현장조사는 문화재적 가치가 큰 유형문화재와 민속자료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에따라 유형문화재 97건과 민속자료 8건에 대한 변형실태가 조사되었다. 여기에서 변형이란 근대화 이후(1910년 기준) 본래의 건축적 성격을 변질시켜 양식적, 형식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형상변경으로 보았다. 한 건축물의 건축적 성격이나 가치는 입지, 배치, 평면, 형태 등 여러 건축적 방법으로 파악될수 있기 때문에 각 건축적 방법이나 성격을 변화시키는 형상변경을 추적하였다. 본래 문헌이나 면담조사를 통하여 원형과 변형의 과정을 추적하려했으나 근거자료가 부족하여 대부분 시각적 판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시각적 판단이란 동일영역이나 동일건물 내에서 양식, 재료, 부재, 형상의 차이를 통하여 변형을 추적한 것이다.

추적된 변형을 유형화하여 변형주체와 원인을 파악하였는데, 보존제도나 보존행정, 보존기술과 관련하여 변형원인을 해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변형을 최소화 하고 건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유지,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안된 대책은 보수, 복원, 관리 등 보존기술상의 대책이라기 보다는 선행적인 조건으로서 필요한 제도적, 정책적 방향을 제안한 것이다. 세부 기술적인 대안들은 선행적인 조건의 전제 위에서 연구될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I. 경남지방 건축문화재의 보존현황

1. 건축문화재 지정의 연혁과 현황

한국에 있어서 문화재의 지정과 보존을 위한 조사와 발굴은 이미 일제시기로 부터 시작되어 왔다. 일제시기 朝鮮總督府에서는 大正3년(1914) 부터 전문가로 구성된 고적조사위원회의 발굴과 조사를 통하여 거의 매년 한 권 또는 여러 권의 고적조사보고서를 간행하였다.⁶⁾ 이에따라 일제는

표 1. 경상남도 국가지정 문화재중 건축문화재의 비중

	총건수	건축문화재	비율(%)
국보	10	1	10.0
보물	90	8	8.9
사적	53	2	3.8
중요민속자료	13	5	38.5
計	166	16	9.6

1916년 「古蹟 및 遺物保存規則」을 제정하고 유적과 유물에 해당하는 385점의 문화재를 등록하였다. 1933년에는 명승, 기념물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법제로서 「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法」을 제정하고 서울의 남대문을 비롯하여 총 242건의 문화재를 지정하였다.⁷⁾

해방이후에도 1933년의 보존령이 의용되다가 1962년 「문화재 보호법」의 제정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이 법에 의하여 1962년 국보 116건, 1963년에 국보 1건, 보물 398건, 사적 120건 등 많은 문화재들이 지정되었다. 그러나 이것들은 새로운 문화재들이 발굴되었다기 보다는 일제시기에 조사, 또는 발굴, 지정되었던 문화재들이 새 법에 의해 새로운 등급으로 재지정되었다고 보여진다. 이후에 국가에서 지정한 건축문화재의 대부분도 이미 일제시기에 조사, 발굴된 것들이다. 즉, 현재 국가지정의 건축문화재들은 한국정부와 전문가의 적극적인 발굴과 조사에 의해 지정되었다기 보다는 과거 일제시기에 조사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방 문화재(시·도 지정문화재)의 지정은 이보

6) 이러한 고적조사 보고서의 발간은 1938년 까지 거의 매년 계속되었다. 한국문화재보존기술진흥회 간행, 『한국문화재보존고(일정시기자료집성1)』, 1992, 13-75쪽
7) 이것은 보물 200건, 고적 24건, 천연기념물 18건으로 구성되었다. 4년뒤인 1937년에는 여기에 보물 27건, 고적 20건, 명승천연기념물 2건, 천연기념물 28건 등 총 77건이 추가된다.

표 2. 경상남도 도지정문화재 중 건축문화재의 건수와 비중

	총개수	건축 문화재	비율(%)
유형문화재	281	97	34.5
기념물	142	5	3.5
민속자료	16	8	50.0
문화재자료	207	145	70.0
합계	646	255	39.5

다 훨씬 늦은 1969년에 시작되었다. 그나마 1969년에는 전국적으로 2점의 지방문화재가 지정되었고, 1971년에 가서야 95점이 지정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 문화재의 지정과 보존활동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방문화재의 발굴과 지정과정을 상세히 살펴 보면 문화재의 조사와 발굴이 결코 정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문화재의 지정절차⁸⁾에서 보여지듯이 대부분 소유자·보유자·점유자·관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지되고, 지정절차가 시작되고 있다. 즉, 정부나 전문가가 지방 문화재를 지정하기 위한 조사나 발굴의 과정이 생략되고 신청된 대상에 대하여 지정의 절차만을 수행하는 수동적인 역할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여하튼 경상남도의 경우 1972년 부터 도지정 문화재가 지정되기 시작하였고, 그 수는 점차 증가하여 1994년 현재⁹⁾ 모두 도지정문화재 453건, 문화재 자료 207건으로서 경상남도내의 국가지정 문화재 217건 보다 3배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문화재 중 건축문화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높은 편이다. 경남도내에서 국가지정 건축문화재는 모두 16건으로서 전체의 약 7%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도지정문화재의 경우 전체 255건 중 건축문화재는 145건을 차지하여 약 70%에 달하고 있다.

이것을 문화재 종별로 분류해 보면 유형문화재 중 97건(34.5%), 기념물중 5건(3.5%), 민속자료중

8건(70%), 문화재자료 중 145건(70%)이 건축문화재로 나타난다. 즉, 민속자료와 문화재 자료에서 건축문화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나 건수로 보면 유형문화재에도 많은 건축문화재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건축적 가치가 높은 것은 유형문화재와 민속자료로 지정되고, 문화재 자료는 건축적 가치보다는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과 관계되어 지정된 것이 대부분이다. (표 2)

이러한 지방문화재의 분류체계는 가치에 따른 등급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존과 보호의 정도를 정하는데 문제가 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국보, 보물, 사적, 중요민속자료 등 중요도에 따라 세분류가 있지만, 지방지정의 경우 문화재의 성격만으로 분류되고 중요도는 단순히 二分化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따라서 얼마나 잘 보호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¹⁰⁾

경남의 도지정 건축문화재를 다시 건축유형별로 분류하면 (표 3)과 같다. 유형별로 보면 사찰 건축이 많은 비중(62건)을 차지하고 있지만 향교·서원 59건, 사당 및 재실 41건, 주택 40건, 루·대 및 정자 37건 등 거의 모든 건축유형이 고루 망라되고 있다. 이것을 문화재 종별로 분류해 보면 주택의 경우는 대부분 민속자료로 지정되어 있고

8) 문화재관리국, 『문화재관리 실무편람』, 1985, 9쪽에서 시도 지정문화재 지정절차도 참고.

9) 1994년 현재의 경남도 문화재 건수는 모두 경상남도, 『문화재목록』, 1994.11에서 발췌한 것이다.

10) 일제시기 조사자료에는 문화재의 등급을 갑·을·병·정으로 나누어 보존가치를 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3. 경남 도지정문화재의 건축유형별 분류

	사찰	향교	주택	루대	정자	사당	재실	서원	비각	관아	합
유형문화재	40	27	2	4	5	4	2	6	1	6	97
기념물				1		2			2		5
민속자료			7			1					8
문화재자료	22	2	31	6	21	22	10	24	7		145
합계	62	29	40	11	26	29	12	30	10	6	255

11) 나머지는 유형문화재에 해당한다. 문화재자료는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향토 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건축유형을 포괄하고 있다. 다만 루와 사당, 비각 중 일부가 왜 기념물로 지정되었는지는 이해하기 어렵다.¹²⁾ 여하튼 이러한 종별분류체계는 생활문화를 반영하는 주택과 기타의 건조물을 구분하고 있을 뿐 건축유형에 따른 분류체계는 아니라는 점을 알려두고자 한다.¹³⁾

건축문화재의 경우 지정단위 또한 대단히 다양하다. 향교, 서원, 사당, 재실, 주택 등의 문화재는 단지전체가 1건의 문화재로 지정되는 반면에 사찰의 경우는 단지전체가 지정되는 경우가 드물고 각 건물별로 지정된다. 예를 들면 통도사의 경우 보물 1건, 유형문화재 12건, 문화재 자료 1건으로 모두 14건의 건축문화재가 지정되어 있다. 또한 성주사, 은하사, 응석사 등과 같이 대응전만 지정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지정단위는 문화재의 보호범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를 위한 영역적 범주를 결정하게 된다. 보호범주와 관련된 문제는 다음 절에서 다루기로 한다.

2. 건축문화재의 보존제도와 관리현황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의 보존행위는 문화재의 발굴 및 지정으로부터, 보호구역의 지정, 수리 및 복구, 관리 및 보호, 매입 또는 토지의 수용 및

11) 문화재보호법이나 조례에는 민속자료를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거나 역사적 변천을 나타내는 것을 기준으로 지정된 것'이라고 정의한다.

사용, 사용행위의 제한, 처분의 제한, 현상변경의 제한 등을 포괄한다. 여기에서 각종행위의 제한은 문화재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라는 법적 구속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수동적, 또는 소극적 보존행위로 보여진다. 지정된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는 주로 보수, 정비, 실측조사, 화재 등 피해예방, 관리 등에 한정된다.

문화재에 대해 정밀한 조사를 통하여 원형과 현상을 기록해 두는 일은 보존행위의 첫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지정된 문화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는 기초자료인 동시에, 보존방법을 정하기 위한 자료가 되기도 한다. 또한 문화재의 보수와 화재, 천재지변에 등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술적인 고증자료 및 복원자료로 활용한다는 점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국가지정 건축문화재의 경우 1976년부터 정밀한 조사사업이 시행되어 왔으며, 1992년까지 60건 정도가 완료되었다.¹⁴⁾ 그러나 시도지정 문화재의 경우는 이러한 정부차원의 정밀조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지정문화재에 대한 유일한 조사기록인 문화재 대장상에도 개략적인 배치도나 평면도 이외에는 자료가 없다. 이러한 개략적 도면이나 사진만으로는 보수나 복원을 위한 실증적 자료가 될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황파악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다.

12) 문화재 보호법이나 조례상 기념물로 지정될 수 있는 것은 폐총, 고분, 성지, 연지, 궁지, 요지,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만 해당된다

13) 3장에서 건축유형에 따른 건축적가치와 그 보호범주가 다르다는 사실이 언급될 것이다.

14) 문화부, 『문화재행정』, 1992, 324쪽

문화재 보존을 위한 제도적 행위의 두번째 단계는 보호구역의 설정이라고 볼 수 있다. 현행법상 건축문화재에 대한 보호구역은 지정된 문화재의 외곽으로 부터 일정한 공간적 범주로 한정된다.¹⁵⁾ 따라서 한 문화재가 어떠한 단위로 지정되는가는 그 문화재의 보호구역의 범주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건축문화재의 경우 지정단위가 단독건물에서 부터 단지규모에 이르기 까지 일정하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단지전체가 1건의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건물별로 문화재적 가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호의 정도를 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단지내의 건물들이 독립적으로 지정되어있는 경우 단지내에서 부분적인 보호구역이 설정되기 때문에 주변건물의 신축, 이축, 증개축에 따른 배치체제나 외부공간의 성격을 보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여하튼 현재 법제상으로 보호구역의 설정은 단지전체를 보호하는 개념이 아니라 건물중심적인 보호구역 설정이라는 점도 중요한 제도적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자연상태에 노출된 상태로 보존되어야 하는 건축문화재의 경우 자연적 퇴락이나 인위적 훼손에 의한 형상변경은 필연적인 일이다. 이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한 보수, 또는 수리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실제로 건축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대부분의 예산은 보수 또는 수리에 투입된다.¹⁶⁾ 문화재의 보수·정비절차를 보면 시도문화재위원이나 관계공무원의 점검 및 실태조사를 통하여 시작된다.¹⁷⁾ 그러나 실제로 보존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로 하여금 정기검진을 수행하게 하는 일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보수행위는 소유자나 관리자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지방정부는 그 이후의 일들을 집행할 뿐이다. 따라서 무엇이 얼마

만큼 변형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일은 오로지 실무공무원의 열의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담당공무원들도 문화재의 전문가가 아니며, 담당보직 인원이 대단히 부족하고, 그나마 다른 부서로 자주 전보되기 때문에¹⁸⁾ 관할지역의 문화재 현황을 파악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보수과정에서 전문가의 참여는 설계도서의 심의라는 형식적 절차에 한정되어 있다. 현황에 대한 자료는 오로지 설계자의 현황도면과 사진에 의존할 뿐이다. 공사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감독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대부분 준공절차를 거치는데 불과하다. 설계의 진실성을 신뢰한다고 하더라도 보수재료의 적합성, 재료의 가공방식이나 조립방법의 적절성 등은 설계도서만으로 확인될 수 없고, 전문가적 지식이 없이는 식별되기 어렵기 때문에 보수과정에서의 변형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소유·관리체제 또한 건축문화재의 원형 보존을 어렵게 하는 한 원인이 된다. 건축문화재에 대한 소유 실태를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것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사회단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45% 정도로서 향교의 경우는 향교재단에 의해 소유되며, 사찰의 경우는 사찰자체의 명의로 소유된다. 개인이나 문중이 소유하는 것도 45%에 육박한다. 즉, 건축문화재의 90%정도가 행정기관이 아닌 사설단체나 개인의 명의로 소유되고 있는 것이다.¹⁹⁾

이렇게 소유된 문화재들은 대부분 소유자에 의해 자율적 관리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관리에 따른 비용에 대해 공공적 지원은 거의 없다.²⁰⁾ 현행제도상 행정기관은 지정된 문화재에 대한 사용행위의 제한, 처분의 제한, 현상변경의 제한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 보호할 의무만을 강제할 뿐 문화재의 지정, 소유, 관리에 따른 혜택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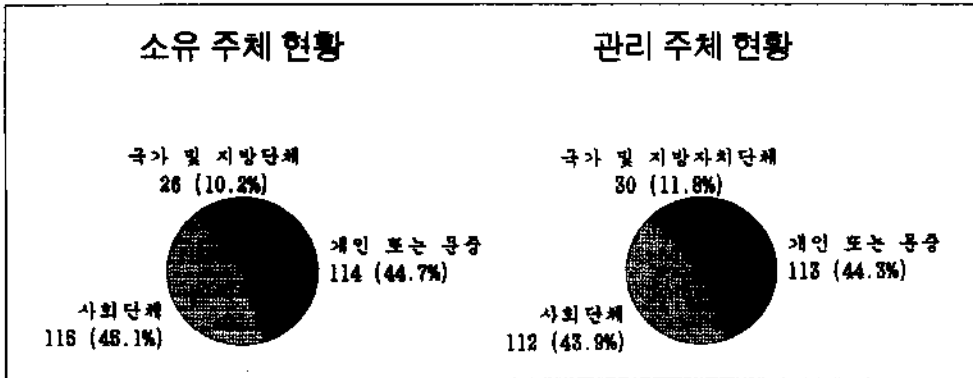
15) 경상남도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 제 7조에 의하면 '목조 및 석조건축물은 각 추녀끝이나 또는 건물 최출몰에서 수직선으로 당는 각 지점을 서로 연결하는 선에서 10m내지 50m(사찰건조물의 경우 500m)이내의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16) 참고로 1994년 경남도의 보수예산은 약 124억원이 투입되었다.

17) 문화재관리국, 『문화재관리 실무편람』, 1985, 112쪽 참조

18) 이승진, "전통문화의 보존·전승을 위한 문화재 행정의 개선방향", 고려대 석사논문, 1990, 43쪽

표 4. 경상남도 도지정 건축문화재의 소유 및 관리실태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는 또한 문화재 지정을 기피하거나 보호·관리를 소홀히 하는 주요원인이 되기도 한다.

건축문화재의 소유나 관리가 개인이나 사설단체에 맡겨져 있는한 문화재를 사용하는데 따른 일정한 형상변경도 막기 어렵다. 소유자들은 사용상의 편의를 위하여 시설이나 형태, 구조 등을 바꾸고자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게 마련이다. 특히 일상적인 생활행위가 이루어지는 주택의 경우 생활양식의 차이 때문에 전근대적 생활공간을 그대로 이용하기는 대단히 불편하다. 법적으로는 문화재의 형상변경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지만 공적인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일정한 범주의 형상변경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허가절차가 대단히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사용자 임의로 시설변경이 이루어지는 일이 허다하다. 따라서 사용상의 편의에 따른 문화재의 형상변경과 문화재적 가치의 저하 또한 거의 불가피한 실정이다.

III. 경상남도 지정 건축문화재의 변형실태와 원인분석

1. 입지상의 변형

19) 이는 매장문화재의 경우 발굴후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과 대비된다.

건축물의 경우 일정한 장소에 건립되는 것이며, 그 장소와 더불어 의미를 갖는다. 일정한 영역내에서 특정한 자리에 위치해야 하는 필연성과 주변지역과의 장소적 맥락, 그리고 건축물로부터의 경관과 건축물을 포함하는 경관 등은 그 건축물의 건축적 성격을 구성하는 중요한 속성이다. 따라서 그 본래의 자리를 떠나거나 주변지역의 환경적 질이 변하거나 주변경관이 변질될 경우 그 건물이 가지고 있었던 건축적 성격이나 가치에 심각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근대화과정에서 급속한 도시팽창과 개발이익을 앞세운 도시계획과 지역개발은 항상 문화재 보호정책 보다 우선시되어 왔기 때문에 도시지역에서의 지역환경은 급속히 변질되어 왔다. 따라서 도심에 소재하는 문화재들은 개발이익이라는 이유로 移建의 요구를 받거나 주변지역의 形質變更, 景觀의 파괴 등 입지적 성격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받아왔다. 특히 도시내의 광역적인 입지성격을 갖는 도시형 문화재나 경관형 문화재들은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보호구역만으로는 그 입지적 성격의 보존을 기대할 수 없었다.

입지적 성격이 중요한 가치를 구성하는 문화재는 성곽, 성문, 관아(동헌, 향청, 객사 등), 향교,

20) 경남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 33조에 의하면 관리단체가 문화재의 관리, 보호, 수리 또는 기록작성에 필요한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보수비용을 제외한 기타 예산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단묘 등 도시형 문화재와 루.정과 같은 경관형 문화재를 둘 수 있다. 도시형 문화재는 과거 邑城의 공공시설물로서 도시의 공간구조와 역사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념물 들이다. 또한 루.정과 같은 경관형 문화재는 그 건물의 역사적 유래나 형태적 아름다움보다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경관적 가치 때문에 지정된 것들이다. 따라서 그 입지적 성격이 변화할 경우 그 문화재적 가치는 저하될 수 밖에 없다. 이는 단지 문화재의 가치저하라는 측면보다는 도시의 역사성, 경관성의 파괴라는 측면에서 더욱 심각하다.

건조물의 移建은 가장 심각한 입지적 변형이다. 문화재대장의 기록상으로부터 볼때 경상남도 지정 유형문화재 중에서 일제시기 이후 본래의 위치로 부터 이진된 사례는 전체 5건에 이른다. 學士樓, 昌寧客舍, 鳳樓亭과 陶村別廟와 같이 문화재로 지정된 이후에 이진된 사례도 있다. 특히 관아시설과 같은 도시형문화재가 이진되는 경우가 많이 조사된다.

과거 읍성의 구조에서 관아건축은 읍성의 중심에 소재하며 성곽 및 도로체계와 함께 읍성배치계획의 골간을 이루어 왔다. 일제시기 이후 이러한 시설물 들은 관공서나 공공건물로 전용되다가 도시계획 또는 지역개발이라는 명분에 따라 철거나 이전의 요구를 받게된다. 예를 들어 咸陽學士樓는 본래 咸陽客舍에 부속된 루로서 함양읍성의 중심적 관아시설이었으나 일제시기 이후 국민학교시설로 전용되다가 시설개선의 요구에 의해 도심의 간선도로변으로 이전되어 버렸다. 한편 咸化樓는 咸陽邑城의 南門樓였으나 도시계획에 의해 성곽과 관계없는 공원안으로 이진되었다. 창녕객사 또한 창녕현 관아의 부속건물이었으나 두차례의 이전을 거치는 동안 과거 읍성시절의 위치와는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이진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재들은 단지 형태적 의미만이 잔존할 뿐, 도시내의 공공시설물로서 기능적 가치는 물론 도시적 맥락, 경관구조를 상실하여 문화재적 가치가 현저하게 저하되어 버린 것이다.

문화재로서의 당해건물이 이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토지이용이 변화함으로써 그 입지적 성격이 변질되는 사례도 흔히 발견할 수 있다. 도심지내에 소재하는 거의 모든 문화재는 도시개발에 따라 입지적 성격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의 용도변경과 신축되는 현대식 건물, 도로체계의 변화, 진입로의 변경, 인식성의 저하 등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그 건물이 소재하고 있었던 본래의장소적 맥락이 상실되고, 문화재는 현대화된 도심속에 섬처럼 남겨지게 된다.

토지이용의 변화로 인한 가장 심각한 피해는 관아시설의 해체와 분리에 있다. 관아시설은 본래 동헌을 비롯한 내아, 각종 청사, 객사 등으로 일괄을 이루었던 단지형 건축물군이다. 이러한 건물군은 도심부에 자리하였고 일제시대 이후 부속건물들의 해체와 용도변경, 토지의 사유화 및 현대식 건물의 신축 등으로 동헌이나 객사 등 중요한 건물만 남게된다. 예를 들어 진해현 관아의 경우 본래 東軒을 비롯하여 刑房所, 司令廳, 三門, 馬房, 그리고 客舍와 더불어 관아시설로서의 일괄을 형성하였으나 그 내부에 면사무소가 들어서고, 객사는 중학교 교사로 사용됨으로써²¹⁾ 그 일괄이 해체되고 말았다. 따라서 현재는 동헌건물과 객사유지만이 별개의 영역에서 보존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남아있는 부속건물과의 관련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거제현의 관아시설도 마찬가지로 岐城館과 부속건물인 秩廳만 남아 있다. 더구나 철거된 자리는 모두 사유화되고 현대식 건물이 신축되어 과거 읍성시절의 단지적, 도시적 의미를 찾아보기 어렵다.²²⁾

移建되거나 주변의 토지이용이 변화된 경우 대부분의 문화재들은 본래의 경관적 성격을 상실하게 된다. 경관적 성격의 변화는 특히 경관조망용 건축물에 있어서 더욱 심각하다. 樓亭건축은 본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조망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21) 그나마 객사는 1985년 화재로 소실되고 유지만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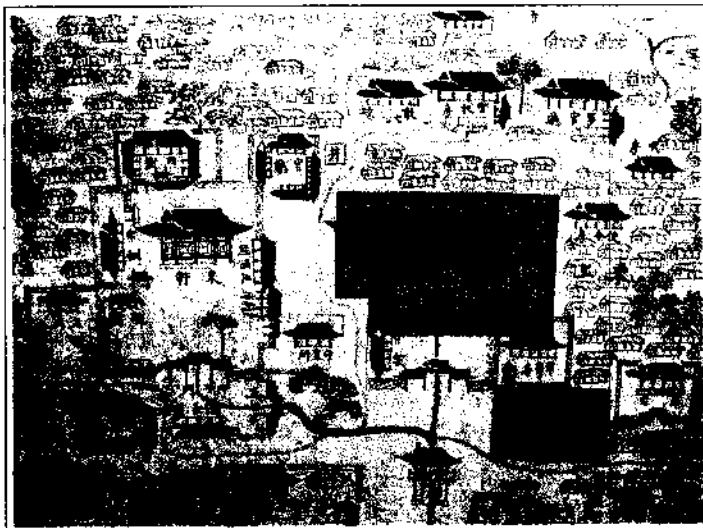


그림 1. 조선시대의 거제현과 관아시설의 배치 22)

그 경관요소와 더불어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²³⁾ 따라서 그 경관적 조건이 변화하는 경우 부정건축으로서의 의미나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도시외곽에 소재하는 樓亭의 경우는 주변지역이 미개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경관요소의 변화가 적지만 도시내에 소재하는 부정건축들은 주변지역에 고층건물이 건설되어 시계가 막히거나 경관요소의 변질이 이루어진다. 이는 문화재의 경관요소를 변질시키다는 의미보다는 도시내의 뛰어난 경관요소들이 개발에 의해 파괴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앞서 예를 든 학사루나 함화루의 예는 이점에 따라 본래의 경관요소를 상실한 경우에 속한다. 향교 또한 풍화루를 갖는 경우 루의 조망요소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향교의 전면으로 토지이용의 변화가 심하고 근래에 들어 고층아파트가 건설됨으로써 시계를 막거나 제한하는 사례가 흔히 발견된다. 이는 조망용 루로서의 제 기능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건축적 가치의 저하이며, 따라서 문화재적 가치의 저하라고 생각된다.

이와같이 입지적 가치가 큰 도시형, 경관형 문

화재들은 도시개발이나 지역개발에 의해 그 입지성이 파괴됨으로써 문화재적 가치를 잃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입지상의 변형은 그 범위가 대단히 광역적이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이라는 제도적 틀안에서는 막기 어렵다. 도시의 현대적 기능이나 효율, 개발이익이 역사적 환경의 보존이라는 가치보다 우선시되는 한 이러한 변형은 막을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재들은 문화재 보호측면이 아닌 도시의 역사적, 경관적 환경보전이라는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도시의 역사와 전통적인 특성을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많은 학자들을 통하여 일반화되어가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도시의 역사적, 경관적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왔다.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역사적 건축물은 물론 자연경관도 보존대상에 포함되고 있으며 보존의 범위도 건축물을 포함한 가로, 지구의 개념으로 광역화되고 있다.²⁴⁾

22) 그림에서 본래의 관아시설들은 모두 철거되고 타 용도의 신축건물로 신축되었으며 기성관과 절청만 그자리에 남아있다.

23) 부정건축의 경관은 대부분 그 지역의 대표적이고 아름다운 경관으로서 八景, 또는 八詠에 포함되거나 그 경관요소를 조망하는 위치에 건립된다.

표 4. 입지상의 변형유형과 원인

건축유형	변형유형(사례수)	변형주체 또는 원인
관아건축	이건(3)	도시계획 또는 지역개발
향교건축	주변 토지이용의 변화(10)	
루정건축	주변 경관의 변화(5)	지역개발

우리나라에서도 전통건조물 보존법에 의한 문화재 보존지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보존지구 등의 제도적 장치가 있으나 이러한 법들은 아직 역사 문화 환경의 보전이라는 총체적 차원으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 외국의 경우 처럼 광역적인 범주에서 도시의 역사적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나 정책이 수행된다면 도시형문화재나 경관형 문화재의 입지적 성격은 저절로 보존될 수 있을 것이다. 도시형 문화재는 그 도시에 있어서 공동체적 역사공간을 형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념물이며, 경관형 문화재는 그 도시의 대표적이고 특징적인 경관과 더불어 존재하기 때문이다.

2. 배치상의 변형

사찰이나 향교, 서원, 주택 등 여러 건물로 일괄을 이루는 단지형 문화재의 경우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배치체계나 외부공간 성격 등은 중요한 건축적 성격의 일부가 된다. 따라서 그 단지내에서 새로운 시설물이 신축되거나, 기존의 건축물이 이축, 증, 개축, 또는 철거되는 경우 외부공간의 성격이 변질되거나, 배치체계가 변화함으로써 본래의 건축적 성격을 잃게 된다. 또한 단지내에 기존의 도로가 없어지거나 새로운 도로가 신설될 경우도 동선체계를 변형시키기 때문에 본래의 배치적 성격을 변질케하는 원인이 된다.

향교나 서원은 大聖殿과 東西廡, 內三門으로 이루어진 祭享영역과, 明倫堂과 東西齋, 外三門

(또는 風和樓)으로 이루어진 講學영역의 정연한 배치규범에 따라 前學後廟, 前廟後學, 廟學並列 등 특징적인 방법이 사용되어 왔다. 각 영역내에서 중요한 건물들이 철거되거나 이축될 경우 본래의 건물구성이나 배치체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향교는 그 일괄 전체가 1건의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되어 왔다. 그러나 경상남도의 사례들을 조사한 결과 이러한 필수적 구성요소의 신축이나 철거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향교에 있어서 동, 서무의 철거는 일단의 사회적 사건으로 해석된다. 1949년 全國儒林大會의 결의로 我國十八賢이 대성전으로 移安됨에 따라 동, 서무를 비우게되거나 멸실되는 일들이 종종 벌어졌기 때문이다. 경남지방의 향교에서도 동, 서무가 없는 경우가 다수 발견된다. 동, 서무의 철거를 문화재로 지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사회적 사건이라고 치부하더라도, 동, 서재의 철거나 이축은 심각한 문화재의 변형행위로 보여진다. 하지만 동재, 또는 서재가 철거된 경우도 3건이 조사되었고, 移築된 경우는 2건이 조사되었다. 이는 주로 관리부주의에 따라 괴멸된 것을 아직 복원하지 못한 채 상당기간이 소요된 경우와 복원시 그 위치를 정확히 고증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

단지형 문화재에서 영역내에 새로운 시설물들이 新築되는 경우도 심각한 변형행위의 하나로 보여진다. 신축되는 건물이 기능적으로, 형태적으로 기존건물과 부조화를 이룰 경우도 있고, 전통양식으로 신축될 경우 자칫 연대가 오래된 건물(또는 복원된 건물)로 오인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²⁴⁾ 향교건축의 경우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화

24) 김홍식의, 『문화환경보전과 건축』, 발언, 1993, 263-33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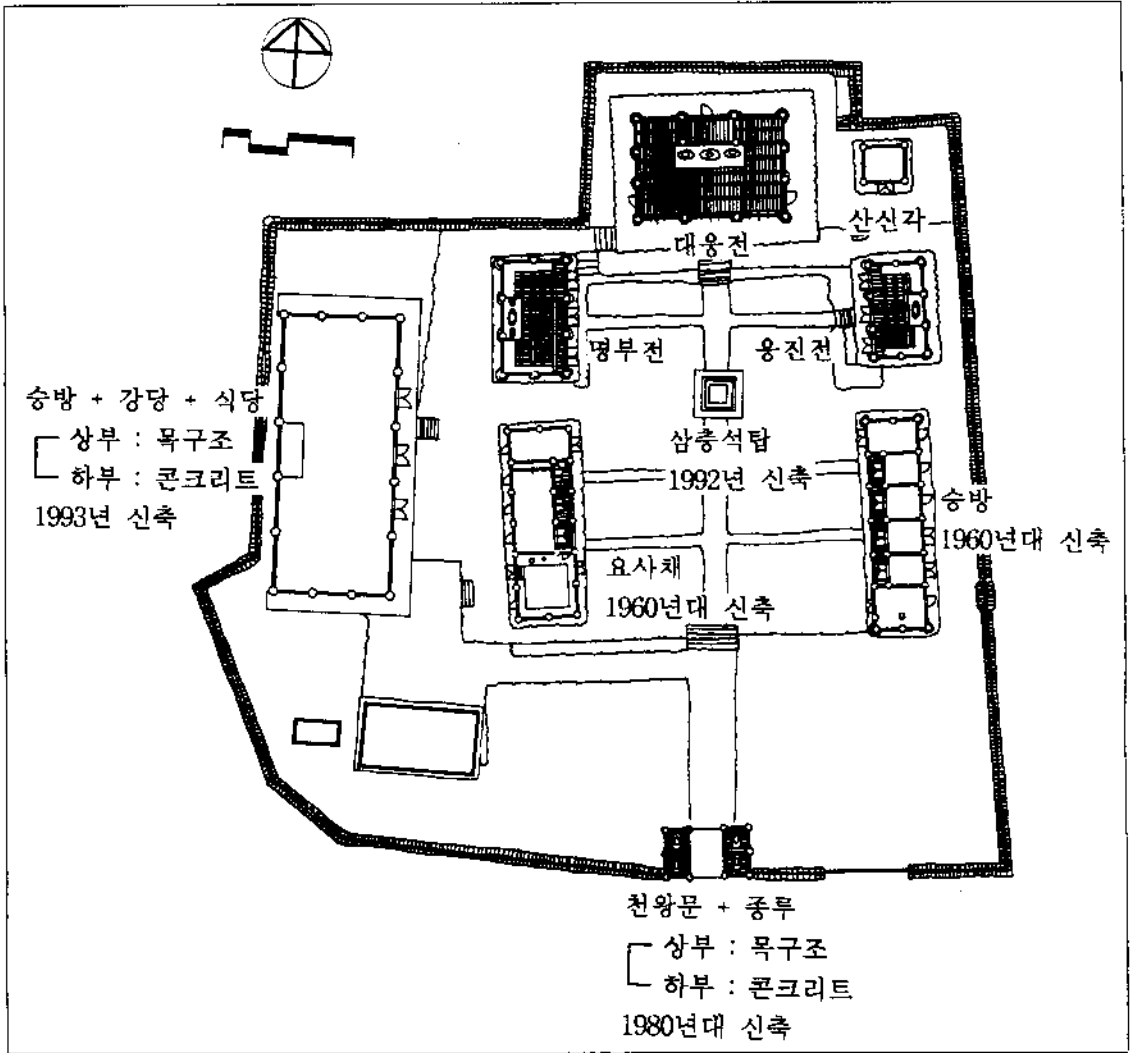


그림 2. 사찰건축에서 배치적 변형사례(長安寺)

장실이나 관리사를 신축하는 경향이 조사되었는데, 외곽이 아닌 강학영역내에 신축된 경우가 8건이나 조사되었다. 이는 강학영역의 활용빈도가 높기 때문에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이루어진 변형이지만 강학공간의 성격을 심각하게 변질시키고 있다.

사찰의 경우 단지내에 새로운 시설물이 신축, 증·개축되는 사례는 조사조차 불가능하리만큼 비

일비재하게 이루어진다. 요사채의 신축은 가장 보편적인 사례이며 석탑, 석등의 신설이나 심지어 전각 및 문루, 기념관 등 각종 佛事도 사찰측의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외곽 영역에서의 신축, 증·개축행위는 지정된 문화재의 배치적 성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문화재 주변의 형상변경행위는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예들들어 지정된 主佛殿의 영역에 요사채가 신축되어 외부공간이 확장되는 사례도 있고, 신설된 석탑, 석등의 구조물이 지정된 문화재를 가리거나 대각선으로 배치되는 사례도 조사되었다. 또한 도

25) 실제로 부속건물의 건축연대나 연혁을 조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표 5. 배치상의 변형유형과 원인

건축유형	변형유형(사례수)	변형주체 또는 원인
향교건축	동.서무의 소멸(6)	소유자의 자의적 철거
	동.서재의 소멸, 이축(3)	관리부주의, 보수시의 미숙
	강학영역내 화장실, 관리사 신축(8)	소유자의 편의적 신축, 변경
사찰건축	불전앞 석탑, 석등, 요사채 신축(7)	소유자의 편의적 신축, 변경
	도로 및 외부공간의 형질 변경(3)	
루정건축	기념관, 비각류의 신축(3)	소유자의 자의적 신축

로체계를 바꾸거나 정원을 조성하여 외부공간을 변질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모두 지정된 건조물의 장소적, 배치적 성격을 변질시키는 행위로서 문화재적 가치를 현저하게 감소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배치상의 변형은 관리자, 소유자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또는 활용상의 편의를 위해 이루어지며, 그 결과는 단지내 기존건물의 철거, 이축, 새로운 건물이나 시설물의 신축, 도로의 변경이나 조원 등으로 나타난다. 이는 단지형 문화재에 있어서 건물구성이나 외부공간, 동선체계등 배치적 성격을 변질케 함으로써 문화재적 가치를 현저하게 저하시키고 있다.

이러한 배치적 변형의 주요한 원인을 살펴보면 우선 건축문화재의 배치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관리자등은 문화재를 중요한 건물에 한정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주변건물이나 외부공간의 형상변경에 대해서는 그 불법성이나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외부공간의 형질변경이나 편의시설의 설치도 쉽게 이루어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두번째는 보호범주의 부적절성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사찰의 경우 대부분 건물단위로 지정되고, 지정된 문화재로부터 일정한 거리가 보호범주로 설정된다. 이렇게 설정된 보호구역은 그 영역적 범위가 좁고(대부분 반경 25m이내), 지정된 문화재의 외부공간이나 배치적 성격을 보호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보호범주 밖에서 이루어지는 형상변경에 대해서는 이를 제한할 제도적 구속력

이 없기 때문에 타 유형보다 더 심각한 변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세번째는 관리상의 문제가 제기된다. 형상변경에 대한 담당기관의 전문적이고 정기적인 점검 및 실태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이미 이루어진 형상변경도 어느정도는 원상회복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불법적인 행위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검도 현상이나 원형에 대한 조사자료가 선행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현재로서는 각 건물의 형태적 성격이나 위치, 외부공간에 대한 현상적 자료마저도 없기 때문에 보수, 복원시 이축이나 증,개축, 외부공간의 형질변경을 검토할 근거가 마련되어있지 않다.

3. 평면상의 변형

건축물이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하고 성격요소는 내부공간과 평면구성이라고 볼수 있다. 내부공간의 규모와 형상, 설비는 공간적 성격을 표현하고 있으며, 평면형태는 공간의 구성방식을 표현하게 된다. 이는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의미하는 동시에, 그 공간들의 쓰임새를 반영함으로써 당시의 생활양식을 유추하는 단서가 된다. 따라서 한 건물의 내부공간이나 평면구성이 본래의 상태에서 변형될 경우 그것은 건축적 성격중에 중요한 부분이 변질되는 것이며, 문화재로서의 가치도 변질되는 것이다.²⁶⁾

그러나 대부분의 건축문화재들은 그 내부공간이 지속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편의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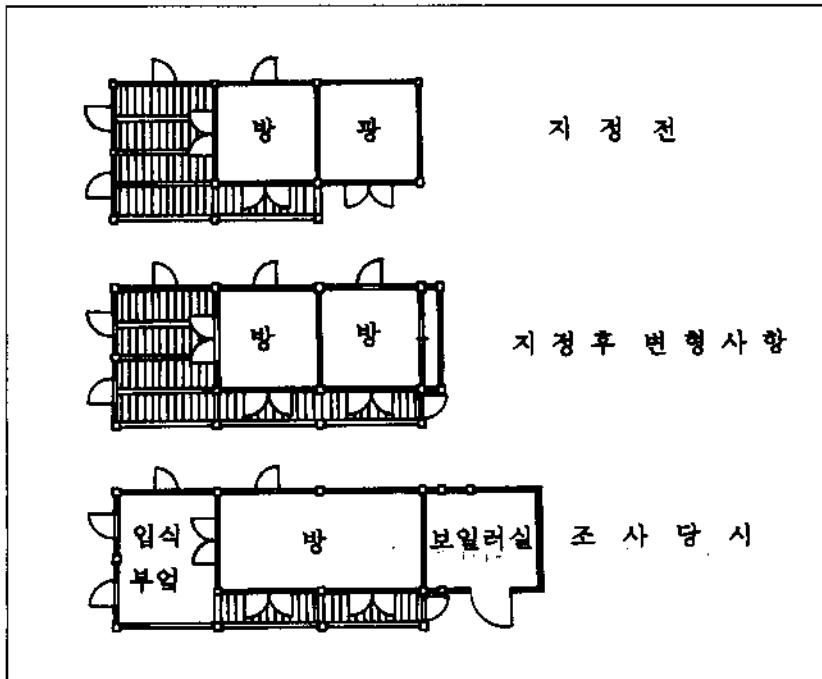


그림 3. 단계 박씨고가 안사랑채의 변형실태²⁷⁾

다른 내부구조의 변형이 빈번히 일어나게 된다. 가장 보편적인 변형은 바닥의 처리방법에서 흔하게 보여진다. 향교나 서원의 향사공간, 즉 대성전이나 사당류에서 내부바닥을 시멘트로 조성하거나 아스타일로 마감하는 사례들이 많이 조사되었다. 또한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 귀틀마루가 아닌 장마루가 시설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는 본래 강회다짐, 또는 전돌깔기 바닥이었던 곳인데 관리자가 임의로 보수하면서 변형된 결과이다. 향교의 명륜당에서는 뒫마루를 신설하는 경우가 많이 조사되었고, 동서재에서는 간막이 구획변경에 의한 평면구성의 변형이 많이 조사되었다. 사찰 불전의 경우 본래의 귀틀마루를 보존하는 경우가 많으나 사용상의 편의를 위해 다다미나 장판지를 까는 사례가 주로 발견되었는데, 이는 영구적인 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심각한 변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사찰이나 향교 등 내부공간의 사용방식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 건축유형들은 비교적 내부구조의 변경이 적지만, 주거생활이 이루어지는 주택은 생활양식의 시대적 차이에 따른 내부구조 및 설비의 변경이 거의 불가피하다. 특히 주택은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경우 민속자료로 지정되는 바, 이는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거나 역사적 변천을 나타내는 것'²⁷⁾을 기준으로 지정된다. 이렇게 지정된 민속자료의 내부공간이 변형될 경우 그것은 본래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상실되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경상남도 지정 민속자료에서도 이같은 사례가 조사되고 있다. 조사된 변형유형은 실용도의 변경, 용도변경에 따른 바닥재료의 교체, 입식부엌이나 실내화장실의 설치, 간막이벽 철거를 통한 공간의 통합, 실의 증축(입식부엌, 화장실, 보일러실의 신설) 등이었다. 이는 모두 현재적 생활의 편의를 위해 이루어진 변형들이며, 그 결과 현재

26) 탁수성, "문화재지정 전통가옥 보존을 위한 주거공간 이용행태 및 변형실태 연구", 경상대 석사논문, 1993, 54쪽에서 옮김

27)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제 5조

표 6. 평면상의 변형유형과 원인

건축유형	변형유형(사례수)	변형주체 또는 원인
학교건축	대성전, 동.서무의 시멘트 마감(8) 아스타일 마감(1), 장마루의 신설(8)	소유자의 임의적 변경
	명륜당의 뿔마루 신설(7) 동.서계의 간막이 구획변경(10)	소유자의 편의적 변경
사찰건축	불전바다 다다미, 비닐장판 깔기(6)	소유자의 임의적 설치
주택건축	간막이 벽 철거(2) 내부화장실(1), 입식부엌설치(2) 보일러실, 창고의 증축(1)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증.개축 설비의 변경

의 모습으로는 건립당시의 생활문화를 유추하기 어려워 민속자료로서의 가치를 상실해 가고 있다.

이와같이 내부공간이나 평면구성의 변화는 활용빈도가 높은 문화재에서 특히 심하게 나타난다. 과거의 공간이나 공간구성으로는 현재적 기능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임의적으로 내부공간의 변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특히 주거형 문화재의 경우 생활양식의 차이에 따른 내부구조의 변경욕구는 불가피하게 보여진다. 그러나 주택에 있어서 이러한 내부구조의 변경은 그것이 민속자료로 지정되어 있는 한 문화재적 가치를 심각히 위협하고 있는데에 문제가 있다.

평면적 변형에 대한 원인도 배치적 변형에서와 마찬가지로 건축문화재의 가치에 대한 인식부족과 문화재 관리행정의 문제점이 지적된다. 건축문화재를 건물의 외관적 형태대로만 인식함으로써 내부구조의 형상변경행위는 당연시되거나 방치되고 있다. 또한 내부공간의 변형에 대한 전문적, 정기적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변형을 방치하고 누적시키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재의 성격에 대한 기록도 평면에 관련한 간수이외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변형을 점검하거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형상변경에 대한 법적제한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주거형 문화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문화재의 경우

활용에 따르는 일정부분의 변형행위는 불가피하게 보여진다. 따라서 문화재적 가치를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편의에 따른 변형은 일정부분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제도상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²⁸⁾ 포괄적, 일률적으로 제한만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허가대상이 되는지를 지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판단은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맡겨져 있을 뿐이다.

주거형문화재에 관련한 문화재 보호를 위해 형상변경을 조건없이 제한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 될 것이며,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임의적인 형상변경을 막기도 어렵다. 거주를 허용할 경우 문제는 어느 선 까지 변형을 허용할 것인가에 있다. 보존의 정도(또는 변형의 허용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화재적 가치에 따른 등급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정된 모든 문화재에 대해 일률적으로 그 용도나 형상변경을 제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민속자료에 대한 등급화가 전제된다면 그 등급에 따라 매입이나 활용의 방안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며, 사용자의 편의에 따른 변형의 허용 범위를 정할 수 있을 것이다.²⁹⁾

28)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25조 4항

29) 변형에 대한 허용정도는 탁수성의 앞 논문 76쪽에서 제안된 바 있다.

4. 형태상의 변형

건축물의 형태적 성격은 건물외관의 형상과 부재의 재료, 가공방식, 구조 등으로 정의된다. 실상 건축문화재의 중요한 가치는 그 형태적 성격의 연대적 가치나 양식적, 형식적 가치 등으로 평가된다. 그러므로 형태적 변형은 모든 건축문화재에 있어서 문화재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행위가 된다. 따라서 건축문화재에 대한 보호나 보존의 수법은 형태적 변형을 방지하는데 가장 많은 노력이 투입되어 왔다.

그러나 건축문화재의 경우 인공적인 보호장치가 없이 자연상태에서 보존되어야 한다는 점, 전문가의 관리가 어렵다는 점, 지속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자연적인 퇴락이나 인위적인 훼손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다. 더우기 보수의 과정에서 전문가의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잘못된 보수로 인한 형태적 변형과 그로인한 문화재적 가치의 변질은 대단히 심각하다. 경상남도의 유형문화재들을 통하여 이러한 변형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단부분에서의 변형사례

여기에서 기단부분은 편의상 계단, 댓돌, 주초 등을 포함하기로 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석재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변형유형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단부분의 재료로는 본래 화강석이나 막돌이 사용되어 왔고 전통적인 가공방식이나 쌓기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근대화 이후 기단부분에서 가장 보편적인 변형은 시멘트의 사용이나 견착돌 쌓기 방식³⁰⁾으로 나타난다. 물론 이러한 변형은 공식적인 보수절차가 아닌 관리자, 또는 소유자의 임의적인 보수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공식적인 보수, 복원과정에서도 의도적인 변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화강석물갈기로 조성된 기단이나 계단, 댓돌 및 주초 등이 나

타나고 있는데, 이는 주로 향교의 강학용 건물이나 사찰의 불전에서 많이 보여진다. 이러한 가공방식은 물론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지만 권위적이고 고급스러운 수법으로 인식된 탓에 보수나 복원시에 소유자의 요구에 의해 설계에 반영되고, 여과없이 시공되고 있다. 이러한 재료나 가공방식의 변형은 상부의 구조물과 심각한 부조화를 이루는 것은 물론 건물의 양식적 가치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된다.

2) 벽체부분에서의 변형실태

여기에서 벽체부분이라 함은 기단위에서 지붕 밑 까지의 부분으로서 기둥과 벽체, 창호 등을 포함한다. 이 부분에서의 변형은 두가지 패턴으로 해석된다. 그 첫째는 노후화를 보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형이며, 둘째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변형이다. 기둥이나 벽체에서의 변형은 전자에 속하며, 창호의 변형은 주로 후자에 해당된다.

먼저 기둥에서의 변형을 보면 기둥재료의 교체, 기둥두께의 감소, 기둥높이의 축소, 기둥수선의 미숙, 퇴기둥의 신설 등으로 조사된다. 특히 벽은 기둥의 하부를 수선하는 과정에서 신·구부재의 재질차이가 심하거나 연결부위가 정교하게 시공되지 않아 부조화를 이루는 경우가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심지어 기둥의 절단으로 건물높이가 낮아지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변형들은 보수 과정에서 철저한 고증이나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사례들이다. 벽체의 경우 시멘트 마감이나 석고보드의 사용이 많이 발견되었다. 이는 퇴락에 대한 관리자나 소유자의 임의적 보수에 기인되기도 하지만 시공자의 의도적인 행위도 있어 시공과정에서의 철저한 감독이 요구되는 또 하나의 사례이다.

창호의 경우 가장 심각한 변형은 창호의 신설이라고 보여지는데, 향교 명륜당의 마루전면에 창호가 신설되는 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난다. 그나마 전통양식의 살창이 아닌 유리문이나 샷시문이 설치되어 입면구성의 완전히 변질되는 경우도 있다. 佛殿의 경우 살창이기는 하지만 창호지가 아닌

30) 견착돌 쌓기는 근대적 석축법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표 7. 평면상의 변형유형과 원인

건축부위	변형유형(사례수)	변형주체 또는 원인
기단, 계단, 주초	시멘트 마감(17), 견치석 쌓기(4)	관리자의 임의적 보수
	화강석 물갈기(27), 주초양식변경(5)	소유자의 요구
벽체	시멘트, 석고보드 마감(35) 수장재의 변형(2)	관리자의 임의적 보수
기둥	퇴기둥의 신설	관리자의 임의적 보수
	기둥수선의 미숙(2)	보수기술의 미숙
창호	창호의 신설(10), 창호의 형태변경(11) 유리, 비닐, 샷시의 사용(7)	사용자의 편의적 변형
구조	포작의 변형(10), 풍판의 변형(10)	복원, 보수시의 오류
	결구방법의 미숙(5), 보강재의 첨가(4)	관리자의 임의적 보수
기와	청기와의 사용(3), 치미의 첨가(1)	소유자의 자의적 변형

유리, 비닐, 플라스틱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 이 밖에도 판문이 살창으로 교체되는 경우, 창호양식이 변형되는 경우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난다. 이는 대부분 겨울철 난방이나 방풍, 채광 등의 편의를 위해 사용자가 임의로 변형시킨 결과들이다.

3) 지붕부분에서의 변형실태

여기에서 지붕부분은 편의상 주두위의 결구로부터 지붕까지를 포함한다. 이 부분에서는 주두와 보, 기둥의 결구방법의 미숙, 버팀대의 설치, 포작양식의 변형, 풍판의 변형, 지붕재료의 교체 등이 많이 나타난다. 이 부분은 사용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의 편의에 따른 변형이 아니라 퇴락이나 노후를 보수하는 과정에서 변형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먼저 양식적 변형을 보면 보, 도리, 기둥, 주두의 결합방식이 전혀 전통방식이 아닌 경우가 나타나고, 한 건물 내에서 포작의 양식이 전혀 다른 모습도 보여진다. 예를 들어 쌍계사 금강문의 경우 한 건물에서 4종류의 서로 다른 익공양식이 나타나 어느 것이 원형인지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이다. 풍판의 형태가 직선화 한 경우도 흔히 나타난다. 이러한 경우는 아마도 지정이전에 이미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양식적 변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서까래의 처짐을 방지하기위해 버팀대를 사용하거나 보강용 기둥을 설치한 예도 조사되었다.

지붕에 있어서 규모, 또는 형태가 변하거나 물매를 어색하게 잡는 경우도 조사되었지만 원형의 상태를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형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향교 대성전의 경우 맛배지붕이 보편적인 법식이지만 팔작지붕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3건이나 조사되었고, 명륜당의 경우 팔작지붕이 원칙이지만 맛배지붕으로 된 사례가 11건이나 조사되었다. 지붕재료가 변형된 경우는 쉽게 식별될 수 있었다. 유약바른 현대식 청기와를 사용하는 경우가 사찰건물에서 3건 정도 발견되었고, 해인사 대적광전의 경우는 일제시대 자료인 『조선고적도보』를 통하여 치미가 신설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형태변형은 자연적 퇴락이나 인위적 훼손에 대한 보수, 복원의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사진 1)³¹⁾ 현행제도를 보면 문화재의 관리 는 대부분 비전문적 관리자에 맡겨져 있으며, 변형에 대한 보수, 복원의 요구도 대부분 관리자로 부터 시작된다. 행정부처는 이러한 요구를 검토하



1917년(『조선고적도보』에서 발췌)



1995년

사진 1. 보수·복원시 형태변형의 사례 (창녕향교 대성전)

여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의 설계도서검토를 거쳐 시공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제도적 절차는 변형실태를 파악하고 원상회복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이러한 제도적 절차는 보수의 시급성에 비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간단한 보수의 경우 공식적인 보수절차가 없이 관리자가 임의로 보수하게 되고, 이러한 비전문적 보수행위가 형태적 변형의 주원인이 되는 것이다. 두번째, 문화재 보존상태에 대한 행정기관의 정기적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변형행위를 방지하는 원인이라고 보여진다. 변형에 대한 신고, 또는 보수, 복원의 요구가 오르지 관리자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관리자에 의한 변형행위는 인지되기 어려운 것이다. 세번째, 원상회복을 위한 공식적 근거자료가 대단히 취약하다는 점이다. 지방건축문화재의 경우 그 건축적 현황이나 원형을 파악하기 위한 공식적 조사,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수, 복원설계는 설계자의 현황조사에 전적으로 의존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신뢰하기 어렵다. 설계도서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과정도 있지만 설계도서만으로는 설계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어려운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공과정에서 철저한 감독이나 검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변형의 원인이 된다. 재료의 검수, 재료의 가공방식이나 부재의 조립방식 등은 설계도서만으로 검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건물의 형태적 가치에 근거하여 지정된 모든 건축문화재에 있어서 형태의 변형은 곧 문화재적 가치의 변질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도 허용될 수가 없다. 더우기 외관적 형태나 구조는 활용상의 편의성과 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인위적 변형행위는 엄격히 통제되어야 한다. 또한 건조물은 자연적 퇴락이나 노후화도 심한 것이기 때문에 주기적이고 전문적인 실태조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시급성에 따른 보수도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보존의 정도나 보수 및 관리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적 가치에 따른 등급화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1) 이 사진에서 계단의 신설, 기둥두께의 감소, 벽체수장의 변경, 익공·화반양식의 변경, 측면 간수의 축소, 측면창호의 변경, 막새기와의 미사용 등 건물전체의 형태가 변형되어 있다. 문화재대장상에는 1904년도에 최종 중수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1917년의 사진으로 볼때 해방이후 복원, 또는 보수의 과정에서 변형된 것으로 생각된다.

IV. 결론 및 제언

경상남도의 유형문화재와 민속자료물 중심으로 건축문화재의 보존현황 및 변형실태를 조사, 분석한 결과 건축물의 입지, 배치, 평면, 형태 등 모든

건축적 성격에서 다양한 변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변형들은 특히 각 건축적 성격을 주요한 가치로 하는 건축유형에 있어서 심각한 문화제적 가치의 파괴로 인식되었다. 또한 변형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주로 보존제도 및 행정상의 문제, 관리상의 문제, 보수·복원 기술상의 문제에 관련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건축유형에 따른 가치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인위적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가. 건축적 가치에 따른 문화제의 유형화

건축의 가치는 비단 건물의 형태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입지, 배치, 평면 등 건축방법의 복합적인 가치를 갖는다. 그러나 현재 문화제 보호제도나 행정은 지정된 건물의 외관적 형태만을 보존하는데 치중되어 있다. 이때문에 입지적 장소성이 가치를 갖는 도시형 문화제나 배치성격이 중요한 가치를 갖는 단지형 문화제, 내부공간이나 평면구성이 가치를 갖는 주거형 문화제는 각각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보호범주에 따라 건축문화제를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나. 문화제 유형에 따른 보존대책의 다원화

도시형 문화제나 경관형 문화제의 경우 광역적인 보호대책이 요구되며 도시의 역사적 환경과 특징적 경관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도시계획적 접근이 필요하다. 단지형 문화제의 경우 보호범주를 단지전체로 확대하여 단지적 성격, 즉 건물구성, 외부공간, 배치체계 등을 유지하도록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주거형 문화제는 생활문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특히 내부공간이나 평면구성의 성격을 원형대로 유지하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다. 보존가치에 따른 문화제의 등급화와 등급별 변형 허용기준의 설정

현재적 용도로 활용되는 문화제에 있어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변형은 거의 불가피하다. 이러한 변형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하는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보존가치에 따라 문화제를 등급화하여, 등급에 따른 허용범위가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함께 구체적인 관리지침이 설정되고, 관리 및 현상변경 제한에 따른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라. 보존상태에 대한 전문적, 주기적 점검과 원형추적을 위한 조사연구의 필요성

현상변경에 대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자연적 퇴락이나 훼손, 관리자의 임의적 변형을 방지, 누적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점검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축물의 형상 및 성격에 대한 보존자료의 작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료는 현상변경의 점검 및 보수, 복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마. 보수, 복원 과정에서 전문가 참여폭의 확대
변형원인중의 하나는 보수, 복원과정에서 설계의 부적절성, 시공기술의 미숙이나 부실시공에 기인된다. 현행 제도상 보수, 복원에 대한 전문가의 역할은 설계도서의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국한되어 있다. 설계도서의 검토만으로는 설계의 타당성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시공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재료의 검토, 가공 및 조립방식 등을 감독하기 어렵다. 따라서 문화제 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이나, 담당공무원의 기술적 지식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정재훈, "문화재보존의 기본방향", 『문화재 제17권』, 문화재관리국, 1984
김봉건, "문화재보수이론", 『문화재 제25권』, 문화재관리국, 1992
윤상섭, "건조물 유형문화재 보존에 관하여", 『문화재 제 18호』, 문화재관리국
한국문화재보존기술진흥회 간행, 『한국문화재보존고(일정시기자료집성1.)』, 1992
문화재관리국, 『문화재관리 실무편람』, 1985
문화재관리국, 『문화재관계법령집』, 1990
문화부, 『문화재행정』, 1992,
경상남도, 『문화재목록』, 1994.11
이승진, "전통문화의 보존·전승을 위한 문화재 행정의 개선방향", 고려대 석사논문, 1990
김홍식의, 『문화환경보전과 건축』, 발언, 1993
탁수성, "문화재지정 전통가옥보존을 위한 주거공간 이용행태 및 변형실태 연구", 경상대 석사논문, 1993,

A Study on the Preservation and the Deformation of Regional Historic Buildings

- On the Basis of Historic Buildings designated by
Kyong-Nam Provincial Government -

Kang, Young Hwan
(Associate Professor, University of Ulsan)

ABSTRACT

How have they preserved the regional historic buildings in Korea? Do they preserve the original value as a historic building. Are there any artificial deformations deteriorating the quality of the buildings? Is the regional system for preservation effective against the artificial deformations of the buildings? These questions are involved in the purposes of this paper.

I investigated the historic buildings designated by Kyong-Nam provincial government. As the result, various patterns of artificial deformation were found. I found that the deformations may deteriorate the original quality of historic building, and it is related somehow to the limitations of regional system for preservation.

So I suggest some alternative ideas for preserving the quality of historic buildings against artificial deformation :

- a. Present system for preservation is not effective for preserving various architectural value such as urban context and landscape, site planning techniques, function of a space, etc. Regional system should be revised for preserving their architectural value or meaning.
- b. Historic buildings should be classified and should have proper protecting area according to each architectural values or meanings, respectively:
 - Historic buildings with Urban context and landscape
 - Historic buildings as a part of a complex
 - Historic buildings as a behavioral setting.
- c. Historic buildings should be graded based on their quality. And standard and criteria for acceptable deformations should be established.
- d. Periodical inspections by experts should be carried out to check out the deformation.